

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입주자모집공고(정정)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2025.09.19.(금) 공고한 '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

※ 변경내용1 (기존 입주자모집공고 46page) : 단품옵선중 침실2 불박이장 수정

변경전	품목	주택형	품목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침실2 불박이장		84A, 84B, 84T	여닫이 불박이장 (내부선반 컬러 선택가능)	1,100,000	110,000
99A, 99B			여닫이 불박이장 (내부선반 컬러 선택가능)	1,200,000	120,000	1,080,000

변경후	품목	주택형	품목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침실2 불박이장		84A, 84B, 84T	여닫이 불박이장 (내부선반 컬러 선택가능)	1,100,000	110,000
99A, 99B			여닫이 불박이장 (내부선반 컬러 선택가능)	1,200,000	120,000	1,080,000
	침실3 불박이장	99A, 99B	여닫이 불박이장 (내부선반 컬러 선택가능)	1,200,000	120,000	1,080,000

※ 변경내용2 (기존 입주자모집공고 46page) : 대형 광폭 강마루 유상옵선 수정

변경전	품목	주택형	품목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대형 광폭 강마루		99A	광폭 강마루(195mmX2040mm) (색상선택 : 시크화이트/ 시크그레이 / 네츄럴 오크)	1,820,000	182,000
99B			광폭 강마루(195mmX2040mm) (색상선택 : 시크화이트/ 시크그레이 / 네츄럴 오크)	1,650,000	165,000	1,485,000
150P, 152P			광폭 강마루(195mmX2040mm) (색상선택 : 시크화이트/ 시크그레이 / 네츄럴 오크)	2,460,000	246,000	2,214,000

변경후	품목	주택형	품목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대형 광폭 강마루		99A	광폭 강마루(색상선택 : 시크화이트/ 시크그레이(195mmX2040mm) / 네츄럴 오크(190mmX1900mm))	1,820,000	182,000
99B			광폭 강마루(색상선택 : 시크화이트/ 시크그레이(195mmX2040mm) / 네츄럴 오크(190mmX1900mm))	1,650,000	165,000	1,485,000
150P, 152P			광폭 강마루(색상선택 : 시크화이트/ 시크그레이(195mmX2040mm) / 네츄럴 오크(190mmX1900mm))	2,460,000	246,000	2,214,000

※ 변경내용3 (기존 입주자모집공고 47~48page) : 주방특화패키지, 현관특화 패키지 유상옵션 수정

구분	주택형	품목		변경전	변경후
주방특화 패키지	84B	선택3	히든주방+홈 바형 장식장	고급주방수전+수납형 대형 아일랜드(3.3m)+상판(상급 엔지니어드스톤)+분주방 상판/벽(일반 엔지니어드 스톤)+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유리슬라이딩 도어+홈바&장식장특화	고급주방수전+수납형 대형 아일랜드(3.1m)+상판(상급 엔지니어드스톤)+분주방 상판/벽(일반 엔지니어드 스톤)+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유리슬라이딩 도어+홈바&장식장특화
	84T	벽부형 아일랜드		상부플랩장(수동형)+키큰장(유리리프트업도어 포함)+고급주방수전+양면수납 벽부형 아일랜드(2.2m)+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상판/벽(상급 엔지니어드스톤)	상부플랩장(수동형)+키큰장(유리리프트업도어 포함)+고급주방수전+양면수납 벽부형 아일랜드(2.6m)+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상판/벽(상급 엔지니어드스톤)
	99B	선택1	벽부형 아일랜드	유리상부장+고급주방수전+양면 서랍 벽부형 아일랜드(2.3m)+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독립형 후드+전기쿡탑+악세서리 선반+상판/벽(상급 엔지니어드스톤)	유리상부장+고급주방수전+양면 서랍 벽부형 아일랜드(2.2m)+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독립형 후드+전기쿡탑+악세서리 선반+상판/벽(상급 엔지니어드스톤)
		선택2	벽부형 아일랜드 + 아일랜드 식탁	유리상부장+고급주방수전+양면 서랍 벽부형 아일랜드(2.3m)+독립형 후드+전기쿡탑+악세서리 선반+상판/벽(상급 엔지니어드스톤)+아일랜드식탁+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	유리상부장+고급주방수전+양면 서랍 벽부형 아일랜드(2.2m)+독립형 후드+전기쿡탑+악세서리 선반+상판/벽(상급 엔지니어드스톤)+아일랜드식탁+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
현관특화 패키지	84A, 84T (택1)	선택1	연박싱 통합형 팬트리	연박싱 테이블(인조강화석 상판 + 3단서랍)	연박싱 테이블(인조강화석 상판 + 서랍형 수납)

※ 변경내용4 (기존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및 주동계획 유의사항 추가)

- 103, 104동 사이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 물놀이터로 계획되어 있으며, 물놀이터의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입니다.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아산시 거주자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9.19.(금)	25.09.29.(월)	25.09.30.(화)	25.10.01.(수)	25.10.16.(목)	25.10.18.(토)~ 25.10.23.(목)	25.10.27.(월)~ 25.10.29.(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41-577-001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아산탕정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개정된 내용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 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초과~10억원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9.19.(금)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9.29.(월)	25.09.30.(화)	25.10.01.(수)	25.10.16(목)	25.10.18.(토)~ 25.10.23.(목)	25.10.27.(월)~ 25.10.29(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장재리 1763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 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공동주택과 - 34522호(2025.09.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83-1 일원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1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 지상 33층 9개동 총 821세대 중 일반분양 738세대 (장기일반민간임대 83세대 제외)
[특별공급 324세대(기관추천 59세대, 다자녀가구 52세대, 신혼부부 137세대, 노부모부양 22세대, 생애최초 5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401	01	084.9865A	84A	84.9865	26.7048	111.6913	51.3608	163.0521	46.9889	453	45	32	104	14	41	236	217	-
	02	084.9767B	84B	84.9767	26.3518	111.3285	51.3549	162.6834	46.9835	129	13	9	30	4	12	68	61	-
	03	084.9735T	84T	84.9735	26.1499	111.1234	51.3530	162.4764	46.9817	12	1	1	3	0	1	6	6	-
	04	099.4276A	99A	99.4276	32.6096	132.0372	60.0883	192.1255	54.9734	111	-	8	-	3	-	11	100	4
	05	099.8447B	99B	99.8447	31.9178	131.7625	60.3404	192.1029	55.2040	30	-	2	-	1	-	3	27	1
	06	150.7977P	150P	150.7977	46.9988	197.7965	91.1334	288.9299	83.3758	2	-	-	-	-	-	-	2	-
	07	152.8629P	152P	152.8629	47.6439	200.5068	92.3815	292.8883	84.5177	1	-	-	-	-	-	-	1	-
합 계										738	59	52	137	22	54	324	414	5

- ※ 대지비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이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 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9865A	084.9767B	084.9735T	099.4276A	099.8447B	150.7977P	152.8629P
약식표기	84A	84B	84T	99A	99B	150P	152P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VAT포함)

약식	동/호 구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	--------	-----------	---------	-----------	------	----------	----------	---------

표기					토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6.01.27	26.07.27	27.01.27	27.07.27	27.12.27	28.06.27			
84A	101동1,3,4,5호 102동3,4,5호 103동3,4,5호 104동3,4호 105동3,4호 106동1,3,4,5호	430	5층	16	173,607,000	316,393,000	0	490,000,000	10,000,000	3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47,000,000		
			6~9층	72	177,256,000	323,044,000	0	500,300,000	10,000,000	4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150,090,000	
			10~19층	176	180,870,000	329,630,000	0	510,500,000	10,000,000	4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153,150,000	
			20~25층	86	183,209,000	333,891,000	0	517,100,000	10,000,000	41,710,000	51,710,000	51,710,000	51,710,000	51,710,000	51,710,000	51,710,000	51,710,000	155,130,000	
			26층이상	80	184,484,000	336,216,000	0	520,700,000	10,000,000	4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52,070,000	156,210,000
84A	105동5호	23	5층	1	169,993,000	309,807,000	0	479,800,000	10,000,000	37,980,000	47,980,000	47,980,000	47,980,000	47,980,000	47,980,000	47,980,000	47,980,000	143,940,000	
			6~9층	4	173,607,000	316,393,000	0	490,000,000	10,000,000	3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47,000,000	
			10~19층	10	177,256,000	323,044,000	0	500,300,000	10,000,000	4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150,090,000	
			20~25층	6	179,595,000	327,305,000	0	506,900,000	10,000,000	40,690,000	50,690,000	50,690,000	50,690,000	50,690,000	50,690,000	50,690,000	50,690,000	152,070,000	
			26층이상	2	180,870,000	329,630,000	0	510,500,000	10,000,000	4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51,050,000	153,150,000	
84B	101동 2호 102동2호 103동2호 105동2호 106동2호	129	5층	5	171,198,000	312,002,000	0	483,200,000	10,000,000	38,320,000	48,320,000	48,320,000	48,320,000	48,320,000	48,320,000	48,320,000	48,320,000	144,960,000	
			6~9층	20	174,776,000	318,524,000	0	493,300,000	10,000,000	3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147,990,000	
			10~19층	50	178,390,000	325,110,000	0	503,500,000	10,000,000	40,350,000	50,350,000	50,350,000	50,350,000	50,350,000	50,350,000	50,350,000	50,350,000	151,050,000	
			20~25층	28	180,728,000	329,372,000	0	510,100,000	10,000,000	41,010,000	51,010,000	51,010,000	51,010,000	51,010,000	51,010,000	51,010,000	51,010,000	153,030,000	
			26층이상	26	182,004,000	331,696,000	0	513,700,000	10,000,000	41,370,000	51,370,000	51,370,000	51,370,000	51,370,000	51,370,000	51,370,000	51,370,000	154,110,000	
84T	107동1,2호 108동1,2호 109동1,2호	12	1층	6	187,141,000	341,059,000	0	528,200,000	10,000,000	42,820,000	52,820,000	52,820,000	52,820,000	52,820,000	52,820,000	52,820,000	52,820,000	158,460,000	
			2층	6	191,641,000	349,259,000	0	540,900,000	10,000,000	4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162,270,000	
99A	102동1호 103동1호 105동1호	80	1층	2	195,007,000	323,084,550	32,308,450	550,400,000	10,000,000	4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165,120,000	
			2층	3	200,321,000	331,890,000	33,189,000	565,400,000	10,000,000	46,540,000	56,540,000	56,540,000	56,540,000	56,540,000	56,540,000	56,540,000	56,540,000	169,620,000	
			3층	3	204,608,000	338,992,730	33,899,270	577,500,000	10,000,000	4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173,250,000	
			4층	3	208,895,000	346,095,450	34,609,550	589,600,000	10,000,000	48,960,000	58,960,000	58,960,000	58,960,000	58,960,000	58,960,000	58,960,000	58,960,000	176,880,000	
			5층	3	212,084,000	351,378,180	35,137,820	598,600,000	10,000,000	49,860,000	59,860,000	59,860,000	59,860,000	59,860,000	59,860,000	59,860,000	59,860,000	179,580,000	
			6~9층	12	216,371,000	358,480,910	35,848,090	610,700,000	10,000,000	51,070,000	61,070,000	61,070,000	61,070,000	61,070,000	61,070,000	61,070,000	61,070,000	61,070,000	183,210,000
			10~19층	30	220,658,000	365,583,640	36,558,360	622,800,000	10,000,000	52,280,000	62,280,000	62,280,000	62,280,000	62,280,000	62,280,000	62,280,000	62,280,000	62,280,000	186,840,000
			20~25층	15	223,422,000	370,161,820	37,016,180	630,600,000	10,000,000	53,060,000	63,060,000	63,060,000	63,060,000	63,060,000	63,060,000	63,060,000	63,060,000	63,060,000	189,180,000

			26층이상	9	224,910,000	372,627,270	37,262,730	634,800,000	10,000,000	53,480,000	63,480,000	63,480,000	63,480,000	63,480,000	63,480,000	63,480,000	190,440,000		
99A	104동1호	31	1층	1	190,720,000	315,981,820	31,598,180	538,300,000	10,000,000	4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161,490,000		
			2층	1	196,070,000	324,845,450	32,484,550	553,400,000	10,000,000	45,340,000	55,340,000	55,340,000	55,340,000	55,340,000	55,340,000	55,340,000	55,340,000	166,020,000	
			3층	1	200,321,000	331,890,000	33,189,000	565,400,000	10,000,000	46,540,000	56,540,000	56,540,000	56,540,000	56,540,000	56,540,000	56,540,000	56,540,000	169,620,000	
			4층	1	204,608,000	338,992,730	33,899,270	577,500,000	10,000,000	4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57,750,000	173,250,000	
			5층	1	207,832,000	344,334,550	34,433,450	586,600,000	10,000,000	48,660,000	58,660,000	58,660,000	58,660,000	58,660,000	58,660,000	58,660,000	58,660,000	175,980,000	
			6~9층	4	212,084,000	351,378,180	35,137,820	598,600,000	10,000,000	49,860,000	59,860,000	59,860,000	59,860,000	59,860,000	59,860,000	59,860,000	59,860,000	59,860,000	179,580,000
			10~19층	10	216,371,000	358,480,910	35,848,090	610,700,000	10,000,000	51,070,000	61,070,000	61,070,000	61,070,000	61,070,000	61,070,000	61,070,000	61,070,000	61,070,000	183,210,000
			20~25층	6	219,135,000	363,059,090	36,305,910	618,500,000	10,000,000	51,850,000	61,850,000	61,850,000	61,850,000	61,850,000	61,850,000	61,850,000	61,850,000	61,850,000	185,550,000
			26층이상	6	220,658,000	365,583,640	36,558,360	622,800,000	10,000,000	52,280,000	62,280,000	62,280,000	62,280,000	62,280,000	62,280,000	62,280,000	62,280,000	62,280,000	186,840,000
99B	104동2호	30	2층	1	199,081,000	329,835,450	32,983,550	561,900,000	10,000,000	46,190,000	56,190,000	56,190,000	56,190,000	56,190,000	56,190,000	56,190,000	56,190,000	168,570,000	
			3층	1	203,333,000	336,879,090	33,687,910	573,900,000	10,000,000	47,390,000	57,390,000	57,390,000	57,390,000	57,390,000	57,390,000	57,390,000	57,390,000	172,170,000	
			4층	1	207,584,000	343,923,640	34,392,360	585,900,000	10,000,000	48,590,000	58,590,000	58,590,000	58,590,000	58,590,000	58,590,000	58,590,000	58,590,000	175,770,000	
			5층	1	210,809,000	349,264,550	34,926,450	595,000,000	10,000,000	4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178,500,000	
			6~9층	4	215,060,000	356,309,090	35,630,910	607,000,000	10,000,000	5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182,100,000
			10~19층	10	219,347,000	363,411,820	36,341,180	619,100,000	10,000,000	51,910,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61,910,000	185,730,000
			20~25층	6	222,111,000	367,990,000	36,799,000	626,900,000	10,000,000	52,690,000	62,690,000	62,690,000	62,690,000	62,690,000	62,690,000	62,690,000	62,690,000	62,690,000	188,070,000
			26층이상	6	223,599,000	370,455,450	37,045,550	631,100,000	10,000,000	53,110,000	63,110,000	63,110,000	63,110,000	63,110,000	63,110,000	63,110,000	63,110,000	63,110,000	189,330,000
150P	102동4호	2	28층	1	387,781,000	642,471,820	64,247,180	1,094,500,000	10,000,000	99,450,000	109,450,000	109,450,000	109,450,000	109,450,000	109,450,000	109,450,000	328,350,000		
	105동4호		28층	1	361,953,000	599,679,090	59,967,910	1,021,600,000	10,000,000	92,160,000	102,160,000	102,160,000	102,160,000	102,160,000	102,160,000	102,160,000	306,480,000		
152P	104동3호	1	22층	1	386,541,000	640,417,270	64,041,730	1,091,000,000	10,000,000	99,100,000	109,100,000	109,100,000	109,100,000	109,100,000	109,100,000	109,100,000	327,3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 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등 기타 인허가 사항에 따라 대지면적 및 대지지분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진입로(가감속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도시개발사업 공사의 지연으로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고,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 보증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T	99A	99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7	3	-	-	-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5	2	-	-	-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1	1	-	-	-	12
	장애인	11	4	1	-	-	16
	중소기업 근로자	11	3	-	-	-	1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2	9	1	8	2	52
신혼부부 특별공급		104	30	3	-	-	13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4	4	0	3	1	22
생애최초 특별공급		41	12	1	-	-	54
합 계		236	68	6	11	3	32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	----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r> <th data-bbox="309 252 627 287">구분</th> <th data-bbox="633 252 1052 287">처리방법</th> </tr> <tr> <td data-bbox="309 292 627 343">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 data-bbox="633 292 1052 343">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p>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p> <p>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p>	<p>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p> <p>모두 부적격 처리</p>																					
무주택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313 1189 2072 1388"> <thead> <tr> <th data-bbox="313 1189 750 1260">구분</th> <th data-bbox="757 1189 1187 1260">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아산, 충청남도, 세종시]</th> <th data-bbox="1193 1189 1624 1260">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th> <th data-bbox="1630 1189 2072 1260">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13 1265 750 1292">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757 1265 1187 1292">200만원</td> <td data-bbox="1193 1265 1624 1292">250만원</td> <td data-bbox="1630 1265 2072 1292">300만원</td> </tr> <tr> <td data-bbox="313 1297 750 1324">전용면적 102㎡ 이하</td> <td data-bbox="757 1297 1187 1324">300만원</td> <td data-bbox="1193 1297 1624 1324">400만원</td> <td data-bbox="1630 1297 2072 1324">600만원</td> </tr> <tr> <td data-bbox="313 1329 750 1356">전용면적 135㎡ 이하</td> <td data-bbox="757 1329 1187 1356">400만원</td> <td data-bbox="1193 1329 1624 1356">700만원</td> <td data-bbox="1630 1329 2072 1356">1,000만원</td> </tr> <tr> <td data-bbox="313 1361 750 1388">모든면적</td> <td data-bbox="757 1361 1187 1388">500만원</td> <td data-bbox="1193 1361 1624 1388">1,000만원</td> <td data-bbox="1630 1361 2072 1388">1,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아산, 충청남도, 세종시]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아산, 충청남도, 세종시]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거주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아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p>■ 자녀기준</p> <p>- 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p> <p>*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진단서 등으로 판단</p> <p>*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p> <p>*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309 528 2134 1002">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2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10%)</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2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아산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border="1" data-bbox="309 1182 2134 1329"> <thead>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아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9.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범위 : 5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아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9.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p> <p>■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1순위</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p>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아산, 충청남도, 세종시]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아산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타입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A/84B/84T	40%	60%
	99A/99B	-	100%
전용면적 85㎡ 초과	150P	-	100%
	152P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p>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비고</p>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p>공고단지 청약연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p>당첨자발표 서비스</p>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0.16.(목) ~ 2025.10.25.(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10.16.(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고
당첨자	특별공급	2025.10.18.(토) ~ 2025.10.23.(목) 10:00 ~ 16:00	· 견본주택 (충청남도 아산시 장재리 1763)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 당사 홈페이지 (http://아산탕정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서류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 시 일정은 재안내 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는 당첨자에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24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원본(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않은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원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세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월별급여명세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해당직장 ②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첨부	①②세무서
	신규사업자	①[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 ※ 사업자등록증 첨부	①국민연금관리공단 ②세무서
	법인사업자	①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③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해당직장 ③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 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건분주택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분주택 비치 ② 세무서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류를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자산입증 서류 목록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조건 청약자에 한함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제출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년도 소득세납부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자영업자,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입증서류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③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③해당직장/ 세무서
------	---------------------------	--	------------

-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사례) 2015, 2016, (2018), (2020), 2021년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 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 이 있는 경우	필수	①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②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발급) ③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행정복지센터
	해당자	①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소유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특별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 외 지역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행정복지센터 ③서울특별시이텍스 (etax.seoul.go.kr) 또는 위텍스 (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농지대장 ②축산업허가증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행정복지센터 ②해당지자체 축산과 ③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 이 없는 경우	필수	①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행정복지센터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서류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주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전자민원 인감증명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아산시)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특별공급 공동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특별공급신청서는 견본주택 청약시 필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견본주택 비치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견본주택 비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해당기관 추천서 (*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으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 코드번호, 담당 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 코드번호, 담당 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1> 참조)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재직증명서(회사직인 날인) 필수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한 무직자는 신고사실 없음을 확인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출력)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발급처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3년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였는지 여부 확인 ※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피부양인 "전원"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건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1> 참조)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재직증명서(회사직인 날인) 필수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의료)보험증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참조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발급처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 코드번호, 담당 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건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한 무직자는 신고사실 없음을 확인	

일반공급 (가점제)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부적격 통보 받은자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무주택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주택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 소형저가주택 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		인감증명서	공급신청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자격확인서류제출 위임용
-----	---	--	-------	-------	----------------------------

대리인 서류제출시 추가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본인)	※ 단,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공급신청자 본인 발급분에 한하여 서류접수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분은 절대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 ※ 전자민원 인감증명서 가능
	○		인감도장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대리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여권의 경우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또는 서명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상기 제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확인,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 장소	문의전화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5.10.27.(월) ~ 2025.10.29.(수)(3일간), (10:00~16:00)	건본주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63)	☎ 041-577-0014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 당첨자 외 건본주택 입장이 불가합니다. (당첨자 이외에는 전부 제3자로 간주하며,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합니다)
- ※ 건본주택 방문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 당첨자의 경우 서류검수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 검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1차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전자민원 인감증명서 가능, 서류접수기간 내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인감 도장만 지참)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 계약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후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아파트 분양금액	농협은행	317-0030-3233-11	한국토지신탁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 분양대금 중 계약금1차는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1차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02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건본주택 제출 [건본주택에서 계약금1차 수납 불가])
- ※ 분양대금의 지정된 계약금2차,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 **부적격 당첨자 처리와 관련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 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 하여야 합니다.
-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 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관련법률의 개정, 부동산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금융기관의 규제,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변경, 금융기관 미확보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이 있을시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분양금액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고,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시행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탁자 등이 대납하기로 하며(단, 위탁자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위탁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금리인상,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중도금 대출 불가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지정한 중도금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계약자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 금(90%) (입주예정일)
84A	16,900,000	1,690,000	15,210,000
84B	16,500,000	1,650,000	14,850,000
84T	17,100,000	1,710,000	15,390,000
99A	20,400,000	2,040,000	18,360,000
99B	19,000,000	1,900,000	17,100,000
150P	30,200,000	3,020,000	27,180,000
152P	29,500,000	2,950,000	26,55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시 확인바랍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예시 1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부탁드립니다. (예시 1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농협은행	317-0030-3234-41	한국토지신탁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피난구설치 대피공간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경우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체결 이 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존 설치품목 미설치분 감액 및 추가 설치품목 증액이 반영된 금액이며, 인지세·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미포함되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자재조달 및 공사 여건상 정해진 기한 이후에는 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업체의 부도, 파산,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샷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 위치, 시스템에어컨 위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조명설비, 우물천장, 스위치, 콘센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거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행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선홍통, 점검구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사용승인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등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 기전설비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샷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결로저감을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을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며,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상 및 사용상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전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최하층 세대와 테라스 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상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발코니의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내부에 물건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 선택품목 계약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선택	설치 수량	설치장소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선택1	2대	거실+침실1(안방)	LG전자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2	4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7,250,000	725,000	6,525,000
84B	선택1	2대	거실+침실1(안방)		4,100,000	410,000	3,690,000
	선택2	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5,180,000	518,000	4,662,000
	선택3	4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7,000,000	700,000	6,300,000
	선택4	5대	거실+침실1(안방)+주방+침실2+침실3		8,940,000	894,000	8,046,000
84T	선택1	2대	거실+침실1(안방)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2	4대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7,250,000	725,000	6,525,000
99A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5,660,000	566,000	5,094,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4(멀티룸)		7,860,000	786,000	7,074,000
	선택3	6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4(멀티룸)+침실2+침실3		10,560,000	1,056,000	9,504,000
99B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5,460,000	546,000	4,914,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4(멀티룸)		7,480,000	748,000	6,732,000
	선택3	6대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4(멀티룸)+침실2+침실3		10,180,000	1,018,000	9,162,000
150P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5,730,000	573,000	5,157,000
	선택2	7대	거실+주방+침실1(안방)+보조거실+침실2+침실3+침실4		11,680,000	1,168,000	10,512,000
152P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안방)		5,730,000	573,000	5,157,000
	선택2	7대	거실+주방+침실1(안방)+보조거실+침실2+침실3+침실4		11,680,000	1,168,000	10,512,000

2) 가전 및 설비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기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가전 및 설비	전기쿡탑(인덕션하이브리브리드3구)		84A,84B,84T,99A,99B, 150P,152P	파세코 PEC-BIH3471S ※ 99A,99B,150P,152P 주방특화 선택 시 선택 불가	390,000	39,000	351,000
	식기세척기		84A,84B,84T,99A,99B 150P,152P	삼성전자 DW80F71YSEW	1,050,000	105,000	945,000
	일체형비데	부부욕실	84A,84B,84T,99A,99B 150P,152P	대림바스 FULEN-Pisa(FULEN-8000)	1,830,000	183,000	1,647,000
		공용욕실		대림바스 FULEN-Pisa(FULEN-8000)	1,830,000	183,000	1,647,000
	천정형복합환풍기	부부욕실	84A,84B,84T,99A,99B 150P,152P	힘펠 3FHD-C150P	570,000	57,000	513,000
		공용욕실		힘펠 3FHD-C150P	570,000	57,000	513,000

3) 단품 옵션 (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단품 옵션	현관 중문	84A,84B,84T,99B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 신발장 하부 조명	1,670,000	167,000	1,503,000
		99A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1,420,000	142,000	1,278,000
		150P,152P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1,530,000	153,000	1,377,000
	침실2 불박이장	84A,84B,84T	여닫이 불박이장 (내부선반 컬러 선택가능)	1,100,000	110,000	990,000
		99A,99B	여닫이 불박이장 (내부선반 컬러 선택가능)	1,200,000	120,000	1,080,000
	침실2,3 교차형 불박이장	150P,152P	침실2 여닫이 불박이장 + 침실3 여닫이 불박이장	3,350,000	335,000	3,015,000
	침실1 유리 슬라이딩도어	84A,84B,84T, 99A,99B	유리 슬라이딩 도어	800,000	80,000	720,000
	에스티룸 유리 슬라이딩도어	84A,84B,84T,99A, 99B,150P,152P	유리 슬라이딩 도어	800,000	80,000	720,000
	디자인 판넬 특화	84A	거실 아트월+복도 디자인 판넬 옵션	2,720,000	272,000	2,448,000
		84B	거실 아트월+복도 디자인 판넬 옵션	3,380,000	338,000	3,042,000
		84T	거실 아트월+복도 디자인 판넬 옵션	2,820,000	282,000	2,538,000
		99A	거실 아트월+복도 디자인 판넬 옵션	4,000,000	400,000	3,600,000
		99B	거실 아트월+복도 디자인 판넬 옵션	3,770,000	377,000	3,393,000
		150P, 152P	거실 아트월+복도+보조거실 디자인 판넬 옵션	6,560,000	656,000	5,904,000
	대형 광폭 강마루	84A	광폭 강마루(190mmX1900mm), 네츄럴 오크	1,380,000	138,000	1,242,000
		84B	광폭 강마루(195mmX2040mm), 시크 그레이 오크	1,370,000	137,000	1,233,000
		84T	광폭 강마루(190mmX1900mm), 네츄럴 오크	1,430,000	143,000	1,287,000
		99A	광폭 강마루(195mmX2040mm) (색상선택 : 시크화이트 / 시크그레이 / 네츄럴오크)	1,820,000	182,000	1,638,000
		99B	광폭 강마루(195mmX2040mm) (색상선택 : 시크화이트 / 시크그레이 / 네츄럴오크)	1,650,000	165,000	1,485,000
		150P, 152P	광폭 강마루(195mmX2040mm) (색상선택 : 시크화이트 / 시크그레이 / 네츄럴오크)	2,460,000	246,000	2,214,000

4) 드레스룸 특화 옵션 (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드레 스룸	침실1 파우더장 업그레이드	84A	서랍형 화장대+터치형 조명 거울	860,000	86,000	774,000
		84T	서랍형 화장대+터치형 조명 거울	610,000	61,000	549,000

특화		99A, 99B	서랍형 화장대+터치형 조명 거울		920,000	92,000	828,000	
	침실1 드레스룸 업그레이드	84A	벽판넬형(조명형)+타공패널		1,380,000	138,000	1,242,000	
		84T	벽판넬형(조명형)+타공패널		1,510,000	151,000	1,359,000	
		99A	벽판넬형(조명형)+타공패널		1,950,000	195,000	1,755,000	
		99B	벽판넬형(조명형)+아일랜드 서랍장+타공패널		2,990,000	299,000	2,691,000	
	침실1 드레스룸&파우더장 업그레이드 침실1 불박이장&파우더장 특화	84B(택1)	선택1	판넬형(조명형)+서랍형 화장대+터치형 조명 거울		1,440,000	144,000	1,296,000
			선택2	여닫이 불박이장+서랍형 화장대+터치형 조명 거울		3,240,000	324,000	2,916,000
	침실1 드레스룸2 특화	99A	벽판넬형(조명형)+타공패널+건식벽체+유리 슬라이딩 도어(1짝)		3,710,000	371,000	3,339,000	
		150P, 152P	벽판넬형(조명형)+타공패널+건식벽체+유리 슬라이딩 도어(2짝)		4,890,000	489,000	4,401,000	
	침실1 드레스룸&파우더장 업그레이드	150P,152P	벽판넬형(조명형)+타공패널+서랍형 화장대+터치형 조명 거울		2,190,000	219,000	1,971,000	
침실4 드레스룸 업그레이드	150P,152P	벽판넬형(조명형)		630,000	63,000	567,000		

5) 주방 특화 옵션 (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주택형	품목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주방 특화 패키지	84A	순환식 아일랜드	상부플랩장(수동형)+키큰장(유리리프트업도어 포함)+고급주방수전+양면 서랍형 광폭 아일랜드(2.0m)+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상판/벽(상급 엔지니어드스톤)	4,320,000	432,000	3,888,000	
	84B (택1)	선택1	히든주방	고급주방수전+양면 수납형 아일랜드(1.7m)+상판(상급 엔지니어드스톤)+본주방 상판/벽(일반 엔지니어드스톤)+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유리슬라이딩도어	3,990,000	399,000	3,591,000
		선택2	히든주방 +아일랜드 식탁	고급주방수전+수납형 아일랜드(1.7m)+상판(상급 엔지니어드스톤)+본주방 상판/벽(일반 엔지니어드스톤)+아일랜드 식탁+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유리슬라이딩도어	6,150,000	615,000	5,535,000
		선택3	히든주방+홈바형 장식장	고급주방수전+수납형 대형 아일랜드(3.3m)+상판(상급 엔지니어드스톤)+본주방 상판/벽(일반 엔지니어드 스톤)+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유리슬라이딩 도어+홈바&장식장특화	7,800,000	780,000	7,020,000
	84T	벽부형 아일랜드	상부플랩장(수동형)+키큰장(유리리프트업도어 포함)+고급주방수전+양면수납 벽부형 아일랜드(2.2m)+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상판/벽(상급 엔지니어드스톤)	4,690,000	469,000	4,221,000	
	99A (택1)	선택1	벽부형 아일랜드	상부플랩장(수동형)+키큰장(유리리프트업도어 포함)+고급주방수전+ 양면서랍 벽부형 광폭 아일랜드(2.2m)+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독립형 후드+전기쿡탑+상판/벽(상급 엔지니어드스톤)+키친핏 냉장고장특화+인출식 5단 시스템서랍장	5,320,000	532,000	4,788,000

		선택2	벽부형 아일랜드 + 아일랜드식탁	상부플랩장(수동형)+키큰장(유리리프트업도어 포함)+고급주방수전+ 양면 서랍 벽부형 광폭 아일랜드(2.2m)+독립형 후드+전기쿡탑+상판/벽(상급 엔지니어드스톤)+키친핏 냉장고장특화+인출식 5단 시스템서랍장+아일랜드식탁+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	7,160,000	716,000	6,444,000
		선택3	순환형 광폭 아일랜드	상부플랩장(수동형)+키큰장(유리리프트업도어 포함)+고급주방수전+ 양면 서랍 순환형 광폭 아일랜드(3.1m)+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독립형 후드+전기쿡탑+상판/벽(상급 엔지니어드스톤)+키친핏 냉장고장특화+인출식 5단 시스템서랍장	6,600,000	660,000	5,940,000
	99B (택1)	선택1	벽부형 아일랜드	유리상부장+고급주방수전+양면 서랍 벽부형 아일랜드(2.3m)+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독립형 후드+전기쿡탑+악세서리 선반+상판/벽(상급 엔지니어드스톤)	6,190,000	619,000	5,571,000
선택2		벽부형 아일랜드 + 아일랜드 식탁	유리상부장+고급주방수전+양면 서랍 벽부형 아일랜드(2.3m)+독립형 후드+전기쿡탑+악세서리 선반+상판/벽(상급 엔지니어드스톤)+아일랜드식탁+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	8,020,000	802,000	7,218,000	
선택3		순환형 광폭 아일랜드	유리상부장+고급주방수전+양면 서랍 순환형 아일랜드(3.1m)+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독립형 후드+전기쿡탑+악세서리 선반+상판/벽(상급 엔지니어드스톤)	7,480,000	748,000	6,732,000	
	150P, 152P		순환형 광폭 아일랜드	상부플랩장(수동형)+키큰장(유리리프트업도어 포함)+고급주방수전+양면 서랍 순환형 광폭 아일랜드(3.1m)+회전형 무선충전 콘센트+독립형 후드+전기쿡탑+상판/벽(상급 엔지니어드스톤)+키친핏 냉장고장특화+홈바&장식장특화	8,380,000	838,000	7,542,000
냉장 고장 특화	84A 84T 99B		키친핏냉장고장특화	키친핏 냉장고장(비스포크/오브제1도어*3개소 기준)+인출식5단시스템서랍장	1,000,000	100,000	900,000
	84B			키친핏 냉장고장(비스포크/오브제1도어*3개소 기준)+인출식5단시스템서랍장+키큰장(유리리프트업도어 포함)	1,420,000	142,000	1,278,000
주방 수납 특화	84A		홈바&장식장 업그레이드	홈바&장식장(인조강화석 상판+래핑선반+서랍+유리도어+가구조명)	1,190,000	119,000	1,071,000
	99A (택1)	선택1	수납장 특화	키큰 수납장(4도어)	1,080,000	108,000	972,000
		선택2	홈바&장식장 특화	홈바&장식장(인조강화석 상판+래핑선반+서랍+유리도어+가구조명)	2,260,000	226,000	2,034,000
다용도실 특화 패키지	99B		케어키친 특화	팬트리 벽체+가구도어+시스템선반+유리슬라이딩도어+강마루 연장마감	1,710,000	171,000	1,539,000
	150P		프랩키친 특화	상하부장+2구인덕선+침니형후드+세탁볼	2,710,000	271,000	2,439,000
보조주방특화 패키지	150P, 152P		포켓키친특화	상부장+하부서랍장+냉장고장+유리 슬라이딩 도어(2연동)	3,360,000	336,000	3,024,000
현관 특화 패키지	84A, 84T (택1)	선택1	연박싱 통합형 팬트리	연박싱 테이블(인조강화석 상판+3단 서랍)	390,000	39,000	351,000
		선택2	현관+복도 분리형 팬트리	분리 건식벽체 신설+가구도어 1개소 추가	610,000	61,000	549,000

99A (택1)	선택1	현관 수납 특화	여닫이 불박이장(신발수납)	1,200,000	120,000	1,080,000
	선택2	프랩&케어키친 특화	보조주방 상판(MMA)+하부장+상부장+분리수거함+불박이 키 큰 수납장+2구 인덕션+침니형후드+손빨래볼+주방수전+유리슬라이딩도어	3,740,000	374,000	3,366,000

6) 욕실 특화 옵션 (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및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욕실 특화	에스티룸&공용욕실 스타일업 특화	84A,84B,84T 99A, 99B	에스티 룸:서랍형 건식세면대+터치형 조명거울+디자인 벽판넬 공용욕실:고급수전&금구류	1,970,000	197,000	1,773,000
		150P,152P	에스티 룸:서랍형 건식세면대+터치형 조명거울(2개소)+디자인 벽판넬 공용욕실:고급수전&금구류+고급 샤워부스+대형벽타일(600x600)	4,110,000	411,000	3,699,000
	부부욕실 스타일업 특화	84A	카운터형 세면대(인조 강화석 상판)+고급수전&금구류+고급 샤워부스	2,270,000	227,000	2,043,000
		84B,84T, 99A,99B	고급수전&금구류+고급샤워부스	1,240,000	124,000	1,116,000
	부부욕실 스타일업 특화	150P,152P	카운터형 세면대(인조 강화석 상판)+독립형 욕조+고급수전&금구류+고급 샤워부스/변기부스+대형벽타일(600x600)	9,820,000	982,000	8,838,000

7) 거실 특화 옵션 (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거실 특화 패키지	거실 멀티룸 특화	99A	양방향 유리슬라이딩도어 2짝(복도면) + 유리폴딩도어 1세트(거실면)	6,770,000	677,000	6,093,000
		99B	유리슬라이딩도어 1짝(복도면)+유리2연동슬라이딩 도어 2세트(거실면)	5,370,000	537,000	4,833,000

8) 조명 특화 패키지 옵션 (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및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조명 특화 패키지 (택1)	디자인조명특화 선택1	84A	현관+거실(복도)+침실1(안방)	2,890,000	289,000	2,601,000
		84B	현관+거실(복도)+주방+침실1(안방)	4,020,000	402,000	3,618,000
		84T	현관+거실(복도)+침실1(안방)	2,830,000	283,000	2,547,000
		99A 150P,152P	현관+거실(복도)+주방+침실1(안방)	4,180,000	418,000	3,762,000

디자인조명특화 선택2	99B	현관+거실(복도)+주방+침실1(안방)	3,940,000	394,000	3,546,000
	84A	현관+거실(복도)+주방(우물천장포함)+침실1(안방)	4,700,000	470,000	4,230,000
	84T	현관+거실(복도)+주방(우물천장포함)+침실1(안방)	4,610,000	461,000	4,149,000
	99A	현관+거실(복도)+주방+침실1(안방)+멀티룸	4,400,000	440,000	3,960,000
	99B	현관+거실(복도)+주방+침실1(안방)+멀티룸	4,160,000	416,000	3,744,000
	150P,152P	현관+거실(복도)+주방+침실1(안방)+보조거실	5,940,000	594,000	5,346,000

9)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 계약자는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하여 별도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사비는 분양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존 설치품목 미설치분 감액 및 추가 설치품목 증액이 반영된 금액이며, 인지세·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미포함되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자재조달 및 공사 여건상 정해진 기한 이후에는 체결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 후 자재 발주가 이루어지므로, 계약금 납부 이후에는 공급주체·시공사의 동의 없이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의 컨셉, 주택형태,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전 수량을 확보한 모델로, 계약자는 이를 적의 판단하여 체결해야 하며, 자재 가격변동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자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마감재 설치에 따라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 선정된 제품의 제조사·모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품질·품귀·신제품 출시·성능개선 등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일부 품목이 전시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된 실 명칭은 설계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인은 견본주택에서 해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호수별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도어 개폐 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과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각각의 냉매매립배관·연결용 매립박스·에어컨전원만 제공되며, 이는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경우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안방 이외 실에는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별도로 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용 배관·박스·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세대별 차이가 있고, 기능상 장애가 우려될 경우 현장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공간에는 용량에 맞는 실외기가 각 실내기 소요 용량 합산, 조합률을 고려하여 제조사가 보증한 범위 내에 적합한 사양으로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진동이 발생하고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실외기에 스탠드형·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연결할 수 없으며, 임의 연결로 인한 문제는 계약자 책임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은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스프링클러·천장 내부 배관·우물천장·커튼박스 크기·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무선리모콘으로 제어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유선 컨트롤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냉·난방기기는 전시용품으로, 본공사와 사양·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조사·모델은 품질·품귀·공급 중단·신제품 출시·성능 개선 등 사유로 동등·동급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시공 일정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는 냉매배관·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이물질 유입에 유의해야 합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를 선택하면 기본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복합환풍기에 포함)
- 욕실 복합환풍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하고 인접 실내로 소음·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리모컨은 1대당 1개 제공됩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시공 여건(천장 내부 설비·등기구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덕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설치·제공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차감 정산됩니다.
- 인덕션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가스배관·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조명특화 선택 시 제공되는 거실, 주방, 침실1 디밍 제어시스템은 입주 후 조명·스위치 교체 시 기능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선택 시 거실 직부등이 설치되지 않아 평균 조도가 낮아 어둡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 조명특화 선택 시 거실 조명제어장치(릴레이)는 천장 내부에 설치되며, 유지보수 점검구가 현관 팬트리 등에 설치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 선택품목 공사비	농협은행	317-0030-3235-81	한국토지신탁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상기 계좌로 납부 후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을 계약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는 수납하실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각 품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시 동·호수 8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 상기 지정 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및 발코니 확장 입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일반공통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참고하십시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택형 신청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 및 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이 필요한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며,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세대별 공급금액이 상이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수 있으며(공동주택부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 이후에 이전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이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인허가

- 현장여건, 시공상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정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은 2024년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창호, 벽체의 단열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24.08.08)' 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 지자체, 인·허가관청 등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인접대지, 학교부지 등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부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반층상태 및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아산탕정 도시개발구역 내 위치한 사업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사업지의 사업계획 및 경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광고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 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리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처자 등은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단지 주변은 현황과 다를 수 있으며, 계약전 사업부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환경(혐오시설유무, 도로, 기반시설,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 유발요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분양승인 신청서류 기준)과 전시품(조명, 가구, 그림, 장식물, 각종 소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과 전시용 전원설비 등은 설치되지 않고 분양승인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부대시설, 커뮤니티시설 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재는 유상옵션 및 패키지 옵션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 마감재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서류(평면도, 시방서 등)가 비치되어 있으며,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일정기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외벽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질·품귀·생산중단·제조회사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마감자재(예: 타일 등)는 자재 특성상 본 공사 시 일정한 무늬·색상 공급이 어려우며, 품질 판단은 KS 기준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 등은 상황에 따라 타입·위치·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스위치·콘센트 등은 본 공사 시 형태·위치·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 유상옵션 적용 시 전기 배선기구·설비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입구 문틀은 전시용 프레임이 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일반 철재 현관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는 배관·배수구·일반 환풍기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타입의 천장 높이는 2.4m(1층, 최상층 한정, 테라스하우스는 제외)이며, 계약 세대의 실제 층고(기준층 2.3m)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전시조명,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책상 및 의자, 식탁 및 의자, 소파 및 테이블, 화장대 의자 등 포함), 백 패널 및 장식물, 그림,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 밥솥, 다용도실 용품, 토스터, 커피머신, 의류관리기 등),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배관·배선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이동식 가구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현황·설비·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 연출용 시공 부분은 전사용 자재 및 조명, 배관·배선이 포함되어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사업승인(최종변경)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 내·외부 조경은 전사용으로 실제 시공과 무관합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 표현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도로·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설계 이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상업시설 홍보 모형·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조경·시설물·마감재·입면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공부, 엘리베이터 홀,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 (공사 중 사업계획승인 변경도서 포함)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소화기,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관련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선홍통, 배수구, 점검구, 스프링클러, 조경기구, 조명 스위치, 콘센트 및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온도조절기,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필요 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과 전사용 조명, 설비 등은 부속배선·배관을 포함하여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화장실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바닥배수 및 점검구는 실제 배관 설치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보일러 관련 장비 설치에 따라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지환경(도로, 기반시설, 유해시설 등)**

- 본 사업지 남측에 주유소가 위치하며 단지 외부에 분묘, 축사, 발전소, 쓰레기처리장, 위락시설 등의 유해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악취배출시설(축사)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 생활 여건 시설 미비, 공사 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 경관조명 등에 의해 일부 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가로수, 도로, 공원, 녹지 등)은 시공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 및 이와 연계된 단지 내 동선(산책로 등)은 추후 기반시설 계획변경이나 인허가관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위치 및 폭, 선형 등이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도로 계획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사면경사/단차구조물(옹벽 등)이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 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기반시설물의 변경으로 인해 단지내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에는 아산테크노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아산탕정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는 산업단지 위치에 따른 건강영향항목 확인을 위하여 공기질 측정 중이므로, 측정결과가 당사업자에 제공될 시 이를 입 주예정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2021년 측정 결과는 아산 탕정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참조)
- 본 사업지 남측 이순신대로 완충녹지에 소음저감대책으로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으로 테라스하우스 및 일부 저층세대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1동 우측면에 생태육교가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지 공동주택의 경우, 초등학교는 아산갈산초등학교로 배치될 예정이며, 중학교는 탕정학군[탕정중학교, 아산갈산중학교, 가칭 탕정4중학교(2027.3.개교 예정)]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시기에 맞춰 가칭 탕정4중학교 개교가 지연될 경우, 기존 탕정학군(탕정중학교, 아산갈산중학교)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는 교육지원청 의견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등학교 배치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소관이며,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십시오.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관련 사항

-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영유아보육법」 제12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의 3,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사업승인시 권고 사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이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 또는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협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내 “협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지원한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반납할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단지 관리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지자체 또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에게 전기, 수도, 가스 등 단지 간선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고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시기는 입주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에 출입할 수 있고,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함께 돌봄센터

-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55조의 2 (주민공동시설) 제3항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 설치 단지입니다. 단,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며 “주택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설치 관련 사전안내 및 수요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105동, 106동 사이에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접 세대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에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주동계획

- 단지배치도 상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 근린생활시설·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설계되며, 세대 내부의 벽체는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시공됩니다. 실간소음 및 층간소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 VII 입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및 사업부지의 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주출입구, 부출입구, 보행자 통로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어 외부인의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 내 각종 시설물의 배치에 따라 특정 세대는 일조권·조망권·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주차장 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소음, 분진, 바람의 영향, 냄새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으로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갈산초등학교 방면 토목옹벽 및 건축 옹벽은 학교 협의와 도시개발구역내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등에 따라 구조형태 및 시공방식 등이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관계기간의 협의에 따라 서측 옹벽 설계변경시 지하주차장 기초구조형식이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 동의 일부 라인에는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 등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악취, 분진, 해충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은 각동 서측 인근, 107동 108동, 109동은 테라스동 사이 옥외계단 인근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총8개소가 위치에 있으니, 계약 전 단지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02동, 103동 저층 세대는 전면 테라스하우스 세대와 인접하여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108동, 109동 각 세대 후면 선근 공간은 특정세대에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관리 동선만 설치될 예정입니다.
- 107동, 108동, 109동 각 세대는 인근 보행로, 데크와 인접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99A타입 저층세대 전면에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한 천장이 인접하여 설치됨에 따라,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105동, 106동 북측면에 낮은 산 및 경사면과 옹벽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조망 및 새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6동 저층세대 저층 세대는 문주와 인접하여 시야 간섭이 발생할 구 있으니 반드시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일반분양분 외 민간임대가 총 83세대 (101동 1~4층, 17세대 / 102동 1~4층, 14세대 / 103동 1~4층, 14세대 / 104동 1~4층, 8세대 / 105동 1~4층, 13세대 / 106동 1~4층, 17세대, 각 동의 필로티층은 제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안테나는 105동, 이동통신 중계장치는 102동, 103동 104동, 106동의 각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 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탑층과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전자파 영향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는 옥상에 설치된 각종 구조물에 의한 바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다용도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부에 금속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는 경우, 인근 세대에 반사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점용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소음, 놀이터와 운동시설 소음, 쓰레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악취, 분진, 해충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관계 법령(건축법, 민법)에서 정한 일조 확보 기준 및 수인한도 범위 내에서 설계·시공되었습니다.
- 동절기 등 계절·시간대에 따라 일부 세대의 거실 및 침실 등에서 일조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각 동별, 세대별 수인한도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조권 관련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수인한도 및 일조시간 확보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하자·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 (색채,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6동 주동 상부외벽 일부구간에 BIPV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모형을 통해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측벽의 특화 및 마감계획은 인허가 및 현장시공여건,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이 제한되거나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옥상 지붕층에는 소방관계법령 및 심의결과에 따라서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필로티 내외부 벽체는 석재 또는 판넬, 석재뿔칠, 석재미장, 그래픽도장 등으로 최종 설계변경 도면에 따라서 시공될 예정이며,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 지하주차장의 구조는 부속동 활용성 및 하자 예방을 위하여 위치, 면적, 층별 층고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1,141대) 및 근린생활시설(4대)을 포함하여 총 1,145대(경차,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주차, 전기차충전 주차구획 포함) 규모로 지하 1층~지하 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상 주차구획은 기둥, 소화전, 설비배관 및 벽등으로 인해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 공간의 구획·높이·면적, 비내력벽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PIT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 레벨, 평면 및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소방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59기(급속 12기, 완속 47기)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 동측 진출입구 지하1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 높이는 2.7m로 소형 택배차는 진입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 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지하2층 주차장 주행 유효 높이는 2.3m)
-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용도별·동별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정주차 운영·통제는 관리주체의 책무입니다.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은 비난방·비단열 공간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매연 등으로 공기질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및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 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 통제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외부에서 비·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접근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통로 폭·출입문 크기 등 구조적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캐노피의 형태·마감재·색채 등은 사업승인 변경 또는 동선·기능·성능 개선을 위해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교차로가 형성되어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간섭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동별 이용 상황에 따라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 주차면 부족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민원 제기는 불가합니다.
-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북카페(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한 유지·보수·관리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부대시설 (관리사무실, 단지내 도로, 자전거주차, 조경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소방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은 아파트 입주자가 공유하며,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인수 전까지는 사업주체 또는 위탁사가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대별로 부과되며, 이후 운영·관리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가구, 비품,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며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홍보 동영상의 표현된 시설물(운동기구, 타격 스크린 장비 등등)이나 전시용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사항이므로 홍보영상 및 투시도의 설치 수량이나 브랜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외부에는 냉난방기의 실외기 설치로 인해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실외기설치장소와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 동선으로 인해 세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외부에는 외벽체의 환기 및 배기를 위한 마감캡이 설치되어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천장에 유지보수를 위해 천정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채광창,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자전거보관대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조망·환경·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치를 명확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보안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 위치·규모·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은 각동 서측 인근, 107동 108동, 109동은 테라스동 사이 옥외계단 인근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총8개소가 위치에 있으니, 계약 전 단지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설치 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 휴게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도서관, 사우나 등 및 부속동(경로당, 어린이집 등)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 부대시설에 대한 홍보 동영상의 표현된 시설물(운동기구, 타격 스크린 장비 등등)이나 디피 용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사항이므로 홍보영상 및 투시도의 설치 수량이나 브랜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 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향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평면, 가구 및 마감재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과 창호 개폐 방향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기준높이는 2.3m로 시공됩니다. (단, 1층·최상층 세대는 2.4m, 욕실·발코니·현관·우물천장, 다용도실 제외, 테라스하우스는 2.3m로 시공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 구조 위치 또는 실별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사업 계획승인)도면의 안목치수는 타일·가구·패널 등 마감재 설치 두께가 미반영된 수치로 입주시 실제 측정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서비스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테라스하우스 1층 세대의 후면 공간은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이며, 세대에서 직접 출입할 수 없습니다.
- 테라스하우스 세대의 후면 창호는 건축 구조상 간접채광용으로 설치되며, 일조량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신발장·주방가구·욕실장 등) 및 빌트인 가전제품으로 가려지는 벽·바닥·천장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레일·조명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재(석재·타일·상판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무늬·패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동등 이상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모델로 시공되더라도 건본주택과 색상·디자인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등 석재류와 주방 상판은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으며, 변색 방지를 위해 반드시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시간 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하며, 자외선·세제·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에서 사용성 개선과 과 하자예방을 위해 주방가구, 발코니가구 및 각종 수납공간은 일부 구성과 위치, 세부규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욕실장 후면과 욕조 접합 벽·바닥에는 타일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여닫이 출입문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되며, 세대 내 PVC 도어는 동급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위생도기·수전류·액세서리류(수건걸이·휴지걸이 등)는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수전류·샤워부스·철재류 등은 반드시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하며, 철수세미 사용 시 흠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지 않습니다.
- 세대 욕실 창문과 인접시설의 창문 배치에 따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수납계획(디자인·크기·도어 수), 우물천장 유무 및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올림공간(우물천장)의 천장고는 상부세대 및 당해층 설비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조명·월패드·설비배관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디자인월 마감으로 줄눈채움이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콘센트 및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따라 일부 면적이 가구·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주방·침실 바닥재는 목재마루로 시공되며, 스팀청소기·물걸레 등 습식청소 시 장시간 수분 노출로 인해 변형·뒤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부 벽체는 석고보드 경량벽체로 시공되므로, 부착물 설치 시 전용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주방 상부장은 가스배관·후드 배기관 설치로 인해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석 및 주방 상판 석재 마감은 이음부위가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테라스, 선크의 도장·마감재질·색상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 세대의 테라스 전용구역(아래층의 지붕)은 공용공간으로, 해당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 요구 시 반드시 개방해야 하며, 등기를 통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펜트하우스 세대 옥외 및 테라스에 임의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방수층을 손상시키는 등의 사유로 아래층 시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시설복구 및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펜트하우스 세대의 일부 오배수배관 및 외부공간 우수배관 층상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유지보수 방식이 층하배관방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 세대의 오배수 배관 위치에 따라 하층부 세대는 배관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 세대의 외부공간 바닥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세대 내 우수유입 방지를 위하여 바닥청소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펜트하우스 세대의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 150P 세대의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150P, 152P 옥외공간 외각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 세대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옥외공간은 건축법 상 상부 지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펜트하우스 옥외는 공용공간으로 콘크리트로 마감되며, 유지보수를 위한 고소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고리 혹은 안전고리 체결용 매입철물 등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 세대는 세대별로 발코니 드레인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테라스 세대의 천장에는 상부 세대의 배관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에는 별도의 수전이 설치되지 않고, 빗물 배출을 위한 배수구만 설치되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테라스 세대는 특성상 단위세대가 외부에서 일부 보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테라스 세대는 1,2층에 계획되어 별도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

- 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단열시물레이션·사용성 등), 관련 기준 등에 따라 프레임 구조·규격·위치·색상·개폐방식·방충망·유리 사양 및 체결방법·하드웨어·난간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유리는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파손 시 상당한 교체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시행위탁자·시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세대는 외벽 마감재 시공에 따라 외부 창호 크기가 다소 축소·변경되거나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폭, 재질, 개폐 방향,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규격·사양·형태·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도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모든 창호와 난간대의 사양·형태·크기·위치·높이·재질·색상·열림방식 및 방향·난간대 설치 여부 등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 (기계 / 전기 설비 등)

- 공용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천정 및 벽체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기계실 및 발전실기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관련 설계도서 (지하 주차장 평면도) 및 상담을 통하여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과 엘리베이터홀 천정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력 방지를 위해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지하주차장·필로티·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유지)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른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공용부위에 설치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조명(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의 유지·보수·관리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및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제연휀룸, D/A)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연휀룸 설치로 인접 세대에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인접 세대는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등 기계실 인접 세대는 장비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저수조실·주차장 등의 층고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전체 높이는 공사 여건 및 시공 방법 등에 따라 피난층 및 옥상 조형물 공법 변경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종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 복도, 지하주차장 천장부와 벽면은 기계배관,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미관성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시설 (기계, 전기, 설비 등)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급수·우수·난방 등 설비배관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 박거나 드릴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가스배관·가스밸브·스위치·조명·수전·콘센트·보일러·전열교환기 등의 설비 위치는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관·현관창고·욕조·샤워부스·발코니, 일부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욕실 천장에는 상부층 배관, 설비, 점검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온도조절기 및 환기 컨트롤 등은 제품의 상향 또는 단종으로 인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확장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세대 개별공사 시 조명기구 및 스위치 등 전기관련 부품은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행·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 위치를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된 식탁 예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벽면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위치 및 장소는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분전함, 단자함은 세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또는 홈오토메이션)의 기능 및 월패드 디자인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창호,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 렌지후드 작동 시 기계 소음 및 배관의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연도(배기배관)는 연소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입주자가 임의로 분리·조정·변경할 경우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가 실내로 누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시공업체 또는 관리주체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사용 시 실외기실의 그릴창은 반드시 개발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닫힌 상태에서 작동할 경우 통풍 불량으로 인한 과열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하우스의 테라스 배수를 위해 외벽면에 배수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

- 동일하이빌 전용 플랫폼은 스마트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며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폰 단말기가 인터넷(통신사, WIFI)에 연결이 필수 조건이고, 아파트 단지의 스마트홈 구축사항 및 외부 네트워크망 연결 여부에 따라 제어 및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하이빌 전용 플랫폼은 운영사 (HT beyond)의 정책에 따라 성능개선, 인터페이스 업데이트 등의 사유로 기능의 추가 및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 시 홍보된 UI/UX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하이빌 전용 플랫폼의 일부 기능에 대하여 운영사 사업정책에 따라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이용 조건은 운영사의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하이빌 전용 플랫폼은 입주지정일 기준 3년간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후에는 사용자(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운영사(HT beyond)간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서비스를 지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 시설

부대 ·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코인세탁실, 휴게실, 셔틀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 입주예정일 및 유의사항

- ※ 입주 예정일 : 2029년 01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원자재 파동,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전용 및 공용) 등에** 대해서는 잔금납부, 열쇠인수, 이사, 소유권이전 및 고지서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열쇠인수일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당사가 안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열쇠인수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실 시공시 현장여건, 전기, 설비, 구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2.7m
지하 2층	2.3m	2.3m

※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로 계획 되었으며, 상기 유효 높이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사항

◎ 친환경주택의 성능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항,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 고효율 콘덴싱보일러 설치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설치 (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녹색건축예비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아산 팜정지구 A1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인증번호 : G-SEED-P-2025-0887-5
건축주 : (주)디케이종합개발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준공(예정)일 : 2028. 09. 09.	유효기간 : 2025. 09. 11. ~ 서울승인일과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팜정면 갈산리 183-1원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층수 : 지하2층, 지상33층	
연면적 : 138,979.8388㎡ (평가 연면적: 138,285.7929㎡)	
건축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가경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림(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5년 09월 11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아산 팜정지구 A1블록	인증번호 : 25-주-예-11-0122
준공연도 : 20281231	평가자 : 반재희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팜정면 갈산리 183-1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층수 : 지하2층/지상33층	유효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138979.8388㎡	유효기간 : 서울승인 또는 서울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가경건축사사무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80.2	121.7	1+	27.4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3.0	76.9	58.7	15.9
급탕	30.7	35.8	26.5	7.3
조명	6.5	6.0	16.4	2.8
환기		3.0	8.3	1.4
합계	80.2	121.7	109.9	27.4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또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비에 따른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아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부동산원장

2025년 08월 08일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아산 팜정지구 A1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2. 신청자 : (주)디케이종합개발
3. 대지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팜정면 갈산리 183-1원일
4. 성능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층벽 차단성능	★	18. 관수형 기기 사용	★
2. 중앙층벽 차단성능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20. 단열외벽 단열성능	-
4. 교통소요도로, 철도역 대면 실내-외 소음도	★	21. 자연기반 녹지율	★
5. 화장실 급배수 소용	★	22. 음향차단성능	★
		23. 생활쓰레기량(미요율)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 농도 저감률 적용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나. 구조 관련 등급		라. 생활 환경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1. 단지에의 보양차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가변성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주민참여형 생활부분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함성	★★
4. 수리용이성 공동부분	★	4. 생활권에서의 접근성	★
		5. 생활환경의 환경관리 계획	★★★
		6. 도시사설도·상하수도(예외)·홍수방지를 위한 배수	★★★
		7. 안전관리 관련 시설의 적함성	★★★
		8. 에너지 성능	★★★
		9.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 수립	★
		10. 건축에너지의 효율적 적용	-
		11. 안전관리 관련 시설의 적함성	★★★
		12. 공동주택의 사회적 책임	★★
		13. 안전관리 관련 시설의 적함성	★★
		14. 생활환경 관련 시설	★★
		15. 주민참여형 생활부분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기 및 경보설비	★
2. 화재경보기	★
3. 대피시설	★
4. 수평대피로	★★★
5. 복도 및 계단 유도도어	★
6. 피난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9월 11일

한국부동산원장

※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내진 성능등급 표시

구분	등급
건축물 내진등급	I
내진능력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 주민공동시설 내 어린이집 관련 사항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거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단위 : 원, VAT포함)

보증서 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274,814,330,000	01282025-101-0005200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④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상 호	(주)와이드디앤씨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금 액	3,083,630,000	792,299,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상 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사	(주)한국토지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110111-1258220
시공사	(주)동일토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06, 402호(두정동, 엠프라자 4층)	110111-0629026
위탁사	(주)디케이종합개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청담동, 신영빌딩)	110111-7732161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 등록업자 : (주)한국토지신탁
- ※ 등록업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10
- ※ 사업방식 : 분양형토지신탁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 소유권 이전형태 : 분양대금 완납시 개별등기
- ※ 사업계획승인 : 2025.07.08

■ 분양형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1. 본 사업은 위탁자인 (주)디케이종합개발이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디케이종합개발이고, (주)한국토지신탁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2.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계약이 종료, 해지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주)한국토지신탁이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의무, 공법상 의무 및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주)디케이종합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공급대금은 본문 기재 (주)한국토지신탁 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로만 입금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 제3자에게 직접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후 하자 불문, 오 시공·미 시공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자인 (주)디케이종합개발 및 시공회사인 (주)동일토건이 부담한다.
 5.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A1BL의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6. 계약자는 위 분양목적물의 대지가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공급한 대지로서 계약자의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은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용지조성사업 준공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7. 분양계약 목적물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주)한국토지신탁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주)한국토지신탁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주)한국토지신탁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시공회사에게, 분양대금 반환 책임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디케이종합개발에게 있다.
 8. (주)한국토지신탁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분양계약 해제를 구할 수 없다.
 9. 상기 분양형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사항보다 우선한다.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아산탕정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63번지 아산탕정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견본주택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아파트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도**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63
- **홈페이지** : <http://아산탕정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
- **문의전화** : 041-577-0014 (10:00~17:00)